

학생상별규정

제정 : 1995.03.01

개정 : 1999.01.05

개정 : 2007.09.01

개정 : 2021.12.01

개정 : 2022.10.01

제1장 목 적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학칙」 제9장에 의거 학생 상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2조(적용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생 (이하 ‘학생’ 이라 한다.)에게 적용하며 학생 상별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.

제2장 포 상

제3조(포상) 포상은 성적우수상, 공로상, 모범상, 봉사상, 전체수석졸업상 등으로 구분하고 기타 학업 성적이나 품행에 따라 별도 시상할 수 있다.

제4조(성적우수상) 성적우수상은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졸업 시에 수여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5조(공로상) 공로상은 재학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중 사상이 건전하고 교육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, 학술·예술·과학·체육·특수한 기술 또는 기능으로 학교 명예를 선양한 자로 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6조(모범상) 모범상은 재학 중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선행이 뛰어나 대내·외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7조(봉사상) 봉사상은 재학 중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하며,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건전한 대학 문화창달에 기여한 자로 한다.

제8조(전체수석졸업상) 전체수석졸업상은 재학 중 학업성적이 가장 뛰어난 자에게 수여한다. 다만, 직전에 전체수석졸업자가 배출된 학과에서 다시 전체수석대상자가 발생하

면 해당 학과는 제외되며 나머지 학과 중 학업성적이 가장 뛰어난 자에게 수여하고 동점자 발생 시 성적사정관련 학칙 및 시행세칙 제33조 성적순위 규정에 의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9조(선발)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른 포상 대상 및 인원은 학생생활지도 위원회에서 선발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3장 징 계

제10조(징계) 징계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 12. 01.>

1. 근신 : 3일 이상 7일 이내로써 강의는 수강시키며 특별지도 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2. 유기정학 : 수강중지를 명하고 유기정학은 7일 이상 14일 이내로 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3. 무기정학 : 수강중지를 명하고 15일 이상으로 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11조(근신) 근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1. 복장 및 용모가 단정치 못한 자
2.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한 자
3. 식당 및 휴게실 등 기타 공공장소에서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
4. 학내 환경을 더럽힌 자 및 공공 시설물을 파손한 자
5. 휴대가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자
6. 학내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한 자
7. 학습 및 수강태도가 불량한 자
8. 단체행동에서 무단이탈한 자
9. 게시물을 무단으로 철거 또는 훼손한 자 및 허가를 받은 게시물이더라도 지정 또는 지시된 장소 외에 임의로 게시한 자
10. 학생증 및 기타 증명을 타인에게 대여해 주는 자 <개정 2021. 12. 01.>

제12조(유기정학) 유기정학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1. 근신처분 2회를 받은 자
2. 교직원에게 불손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한 자
3.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
4. 학생을 헐박하거나 폭행한 자

5. 학교 내에서 상습적으로 음주를 하거나 음주 후 등교, 강의 출석한 자

제13조(무기정학) 무기정학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1. 개선의 정이 없이 제11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자 <개정 2021. 12. 01.>
2. 학생을 집단 폭행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자
3. 고의로 학교 시설물 또는 실험실습 기자재 등을 파손하거나, 이를 반출한 자 <개정 2021. 12. 01.>
4. 학내·외에서 도박행위를 한 자 <개정 2021. 12. 01.>
5. 학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게시물이나 인쇄물을 붙이거나 배포한 자

제14조(의결) 제11조 내지 제13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지도 위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4장 제 적

제15조(제적) 「학칙」 및 「학칙 시행세칙」을 따르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생활지도 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적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01.>

1. 제11조 내지 제13조에 해당되어 징계를 받고도 품행이 불량하여 도저히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<개정 2021. 12. 01.>
2. 학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단체조직 및 선동적인 행위를 하는 자 <개정 2021. 12. 01.>
3. 총장의 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강의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케 한 자
4. 허가없이 동아리 및 동우회 등을 조직하거나 집회를 한 자 <개정 2021. 12. 01.>
5. 교직원에게 반항하여 그의 직분을 욕되게 한 자
6. 학내에서 불온 인쇄물 등을 붙이거나 살포한 자
7.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인 상처(불구)를 입힌 자
8. 교외에서 대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시킨 자

제5장 권리 및 처벌 감면

제16조(권리상실) 제14조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 학생은 자치활동이나 학생의 권리가 처벌기간 중 상실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17조(처벌감면) 총장 또는 학생생활지도 위원회는 징계 중이거나 징계 대상인 학생에 대해 개선의 정이 현저하고 평소 생활 및 학습 태도를 고려하여 학생생활지도 위원회의 결을 통해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6장 보 칙

제18조(보칙)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생생활지도 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한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1월 5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.